# न्धां स्थान द्याराज्य स्थान

## 「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·관리 지침」 개정

2015. 3.



### 「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·관리 지침」개정

●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및 모호한 지정 기준 개선·보완을 통해 특정관리 대상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

### I 추진근거

- ○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제32조(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·관리 등에 관한 지침)
  - ※ 지정기준, 조사방법, 지정·해제 절차, 안전등급 평가기준, 유지·관리 방법 등

### Ⅱ 주요 개정내용

#### ① 재난관리기금 활용 명시(지침 10p)

○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공공분야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 정밀 점검·정밀안전진단을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긴급 보수·보강을 위한 예산 등을 시급하게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

#### [2] 교량·터널 지정대상 시설물 등급을 구체적으로 명시(지침 19p)

○ 교량 및 터널이 설치된 도로 등급을 명확히 표현

구 분	대 상 범 위		- 비고
	현 행	개 정	n 7
교량	∘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연장 20m 이상~100m 미만 교량 ∘ 100m 이상 농·어촌 교량(비법정도로)	◦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-「도로법」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∼100m 미만 교량 -「농어촌도로정비법」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교량 - 비법정도로 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교량	해당 도로 명시
터널	∘ 연장 500m 미만의 2차로 이하의 터널	∘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터널로 - 연장 500m 미만의 지방도, 시도, 군도 및 구도의 터널 - 농·어촌도로의 터널	"

#### ③ 공공청사, 대형건축물 등에 대하여도 경과 규정 적용(지침 20~21p)

- 공동주택과 동일한 경과 규정(15년)을 대형건축물 등에 대하여도 적용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
  - \*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따른 철근콘크리트 등의 구조물 하자담보기간 10년과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및 지자체별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에 따른 노후·불량건축물의 기준인 20년을 절충하여 경과규정을 정함

대 상	범 위	- и
현 행	개 정	ni T
공 공 · <u>다중이용건축물</u> 에 속하지 않는 연면적 660 청 사 <sup>㎡</sup> 이상의 <u>청사 및 업무시설</u>	공 공 ·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되고 중소형건축물에 업 무 연면적 1,000㎡ 이상의 시 설 지방자치단체의 청사	
다중이용 시 설 · 경과규정 없음	중소형 ·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	"
대 형 · 11층 이상~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,000㎡ 건축물 이상~ 30,000㎡ 미만의 건축물	대 형 · <b>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11층 이상</b> 건축물	- "

#### ④ 물놀이, 위험물시설, 공단 지정대상 제외(지침 19p, 21p)

- 물놀이 위험구역은 구축시설물(토목, 건축)이 아닌 자연 상태의 지형으로 계절적 요인(6.1.~8.31.)에 의하여 지정함에 따라 관리 기간이 짧고, 기후 영향에 따른 위험성이므로 제외
  - \* 국민안전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"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세부추진 지침"을 매년 수립·시달함으로써 물놀이 위험구역에 대한 사전 점검과 여름철 물놀이 집중기간 동안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음
- 산업통산자원부 "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·관리 지침"에 따라 한국 가스안전공사에서 지정·관리하는 가스취급시설\* 제외
  - \* 충전소, 판매소, 제조소, 지역정압기
- 환경부「화학물질관리법령」개정에 따라 유독물취급시설 및 화학 물질취급시설에 대한 정기·수시검사 및 안전진단 관리 권한이 시·도에서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으로 이관되어 제외
  - \*「화학물질관리법령」전부개정 시행('15. 1. 1.)
- 공단(일반공단, 농공단지)의 경우 단지 내 설치되는 모든 시설물과 건축물 등은 분야별 지정대상 항목과 중복되어 제외

#### 5 신종업종, 기타로 분류 변경(지침 3p, 21p)

○ 놀이·체험시설 등 레포츠 시설에 대한 지정 범위 명시

현행	개 정	비고
신종업종 • 번지점프장 전수관리	기 타	

#### ⑥ 재난위험시설(DE 등급) 지정 시 전문기관 진단 의무규정 마련(지침 4p, 8p)

○ 정기점검 및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재난위험시설(DE 등급)로 지정하던 방식에서 전문기관 등의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후 결정 ※ 육안점검결과 DE등급 시설은 진단결과 전까지는 정기점검 지속 실시(D-월1회, E-월2회)

#### 7 건설공사장 중 D등급 지정대상 구체화(지침 9p)

○ 공공 및 민간시행 건설현장에서 공사 착공이후 중대재해사고\* 발생 현장 \* 사망 1명 또는 3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 2명 또는 부상자 10명이 발생한 사고

#### 图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정기안전점검 대행규정 마련(지침 13p)

○ 재난위험시설물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정기점검 및 일제조사를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 수 있도록 대행 근거 마련

#### ⑨ 공동주택 자체 안전점검 대상 조정(지침 14p)

○ 안전관리자 미선임 공동주택은 자체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 ※「주택법」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 자체 안전점검 실시

#### 《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》

- ◆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
- ◆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
- ◆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(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)의 공동주택
- ◆「건축법」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

#### 10 기타 미흡사항 등 반영

- 건설공사장 총공사비 기준 제시(지침 5p)
  - ※ 총공사비는 공사예정금액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으로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, 여기서 공사예정금액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이란 조달청 계약인 경우 조사가격을 기준으로 작성된 금액임

- 1개의 사업장에 다수의 삭도궤도가 있는 경우 각 시설별로 지정(지침 5p) ※ 스키장 등에 설치된 리프트·곤돌라 등은 삭도·궤도 분야로 지정 변경
- 중소형건축물로 분류된 여러 시설이 대형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복합건축물에 입주한 경우 지정여부\* 및 안전점검여부\*\* 정의(지침 6p)
  - \* 각각의 분류시설별(판매시설, 숙박시설 등)로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
  - \*\* 안전점검을 총괄하는 담당부서는 주용도로 분류된 시설에 따르되 주용도가 불명확할 경우 재난관리부서에서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정기안전점검 시에는 담당 부서의 총괄 하에 각각의 시설관리부서와 합동으로 안전관리 전반에 대하여 점검
- 재난위험시설(DE등급) 정기점검에 대하여 합동점검반 구성 조정(지침 12p)
  - 관련분야 전문가(건축, 토목, 전기, 기계 등) 합동점검반 구성 : 반기 1회
  - 기타 정기점검의 경우 시설관리부서 담당자가 등급별 실시횟수 (D등급-월1회, E등급-월2회)에 따라 위험여부에 대하여 이상유무 확인
- 건축물 분야의 다중이용시설을 중소형건축물로 분류명칭 변경 및 「건축법」상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와 맞게 변경(지침 20~21p)
  - 지방공공청사 → 공공업무시설, 대형숙박시설 → 숙박시설
    종합여객시설 → 운수시설, 공연시설 → 공연장으로 각 명칭 변경
  - 관람·전시시설 → 관람장과 전시장으로 명칭 변경 및 분리
  - 의료·장례시설 → 의료시설과 장례식장으로 명칭 변경 및 분리
  - 위락·휴게시설 → 위락시설과 관광휴게시설로 명칭 변경 및 분리
- 건축물 분야의 공연장 및 집회장 하한 연면적(300㎡→500㎡) 조정(지침 20p) ※「건축법 시행령」제3조의5 별표1(용도별 건축물 종류)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
-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이 아닌 대형건축물로 분류(지침 21p)

### Ⅲ 향후계획

○ 개정지침 지자체 시달 및 책자 배포 : '15. 3월

○ 개정지침 시스템 반영 : '15. 3월